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미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46

발의연월일: 2021. 3. 2.

발 의 자:윤미향·김용민·박찬대

김주영 · 송옥주 · 천준호

진성준 • 오영환 • 안호영

민병덕 · 홍기원 · 임종성

정태호 • 고용진 • 이성만

임호선 • 이수진비 • 최종유

윤준병 • 이규민 • 조오섭

유정주 · 고민정 의원

(23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. 또한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며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없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제1절에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 ① 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 근로자 를 포함한다)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갱내(坑內)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8조의3(휴게시설의 실태 점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여부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사업장의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

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7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15의2. 제1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 ①
	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
	근로자를 포함한다)가 신체적
	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
	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
	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
	어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은
	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
	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
	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
	하여야 한다. 다만, 갱내(坑內)
	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
	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
	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	<u>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
	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
	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
	<u>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128조의3(휴게시설의 실태 점
	<u>검)</u>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
	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

제175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- 3. · 4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-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15. (생략)

<u>치</u> ċ	卢부와	· 설치	기준	및	관리	기
준의	준수	- 여년	후 등	ス	- 업장	의
- 휴게	시설	운영	실태	를	확인	•
점검	할 수	있다	•			
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75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(3) -----
 - 1. 2. (현행과 같음)
 - 2의2.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 거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 - 3. 4. (현행과 같음)
 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 - 6 -----

 - 1. ~ 15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15의2. 제128조의3제2항을 위반
	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
	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16. ~ 18. (생 략)	16. ~ 18.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